

귀국자 편입학

질의 · 답변 사례집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답변 내용은 2017년 1월부터 2025년 11월 까지 처리된 사례 중 귀국자 편입학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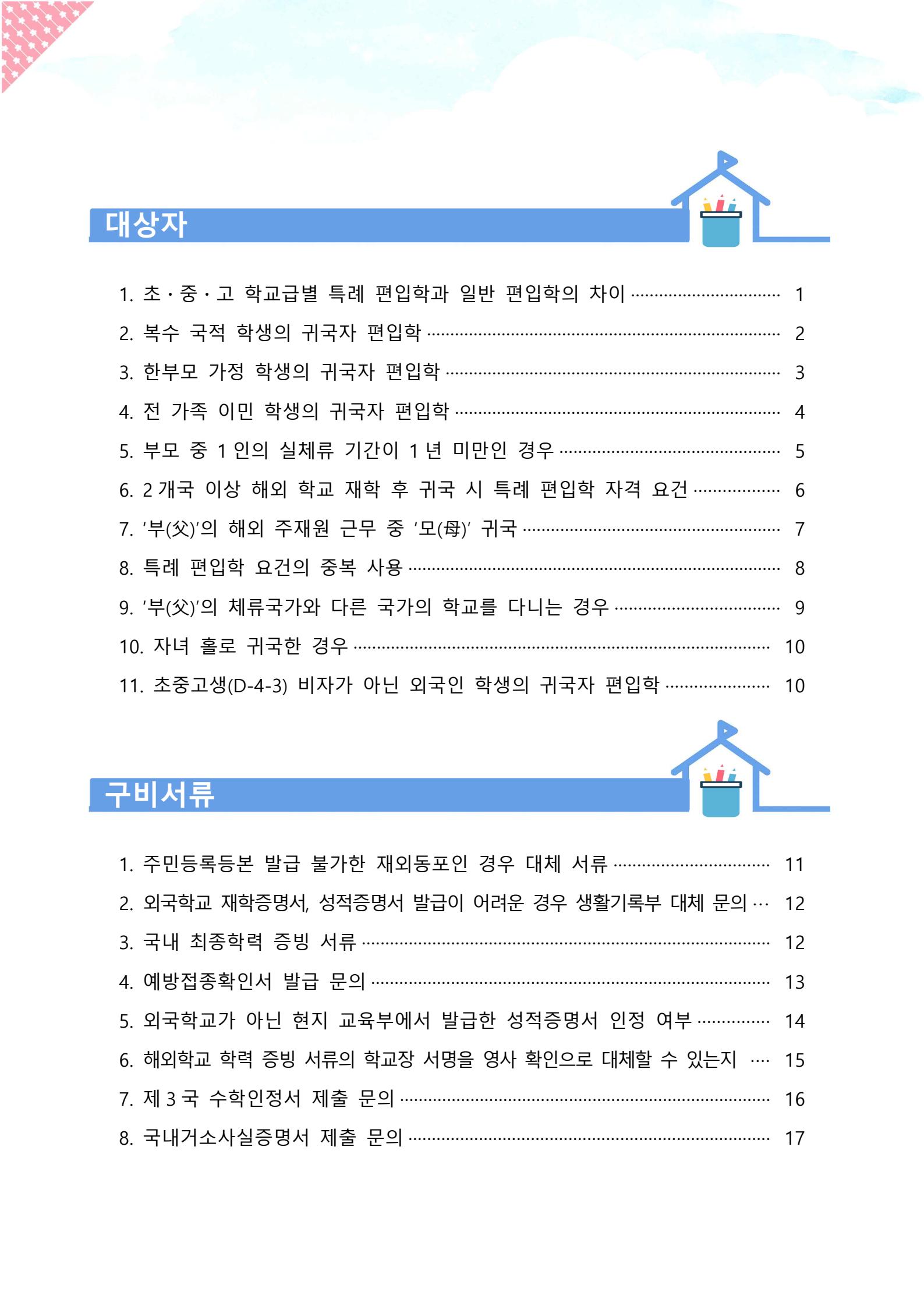


일부 답변 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판단한 내용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이나 지침은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초·중·고 학교급별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의 차이	1
2. 복수 국적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2
3. 한부모 가정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3
4. 전 가족 이민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4
5. 부모 중 1인의 실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
6. 2개국 이상 해외 학교 재학 후 귀국 시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	6
7. '부(父)'의 해외 주재원 근무 중 '모(母)' 귀국	7
8. 특례 편입학 요건의 중복 사용	8
9. '부(父)'의 체류국가와 다른 국가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	9
10. 자녀 홀로 귀국한 경우	10
11. 초중고생(D-4-3) 비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10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한 재외동포인 경우 대체 서류	11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 대체 문의	12
3. 국내 최종학력 증빙 서류	12
4.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문의	13
5. 외국학교가 아닌 현지 교육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인정 여부	14
6. 해외학교 학력 증빙 서류의 학교장 서명을 영사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15
7. 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 문의	16
8.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문의	17

절차



1. 귀국자 편입학 시기	18
2. 외국인학교 귀국자 편입학	19
3. 천재지변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20
4. 국내 최종 재학 학교와 학교급을 달리하여 편입학 가능 여부	21
5.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 재취학 문의	22
6. 초등학교 6 학년 2 학기 말 귀국자 재취학	23
7.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의 재취학	24
8. 중학교 3 학년 전편입학 제한기간에 귀국한 경우	24

학년결정



1. 외국 학력 인정받기 위한 최소 이수 기간	25
2.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 여부	26
3. 초등학교 미인정학력 합산하여 중학교 귀국자 편입학 가능 여부	27
4. 국내 체류하며 해외 학교의 원격(온라인) 수업 듣는 경우	28
5. 6 개월 이상 어학연수 시 학력 인정 여부	29
6. 외국에서 유치원 과정 이수 후, 국내 복귀 시 편입학 학년 문의	30
7. 외국에서 홈스쿨링 과정 이수한 경우 학력 인정 여부	31
8. 해외에서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32
9. 3 학기제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33
10. 4 학기제 학교에서 학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34
11. 13 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35

12. 2 개국 이상 이동하여 학제 차이로 이수 학기가 중복된 경우 학년 결정	36
13. 9 월 학기제인 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경우	37
14. 학년을 낮추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38
15. 4 학기제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39
16. 학제가 다른 2 개국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년 결정	40
17. 국내 최종 재학 학년보다 상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41
18. 국내 학기 중 출국하여 외국 학기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42
19. 국내 학기 중 출국하여 외국 학기 이수한 경우 중학교 졸업 인정 여부	43
20. 외국 학교 학기 도중 귀국하는 경우 수료 인정 여부 및 관련 규정	45
21. 국내 학기 중 출국, 해외 학기 중 귀국한 것을 합쳐 1 학기 인정 여부 ...	46
22. 학제가 다른 2 개국에서 유학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인정 여부	48
23. 학제가 다른 1 개국에서 유학한 경우 학년 결정	49

기타

1.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 확인 방법	50
2. 변경된 학교명이 교육부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51
3. 고등학교 귀국자 편입학 이중 지원 가능 여부	52
4. 2 학기 중간 귀국자의 진급 가능 여부	53

대상자



요지

1. 초·중·고 학교급별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 차이



질의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하여 특례 편입학 대상자입니다.

일반 편입학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례편입학 대상자면 대학교특례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은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별·학년별·성별 입학 정원과 그 정원별로 허용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통학 구역 내 초등학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례 편입학 대상자는 별도의 '특례' 정원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상자보다 학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정원의 폭만 다를 뿐 그 외의 편입학 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특례 편입학 대상 결원이 없더라도 일반 대상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가능

특례편입학 대상자와 대입특례 대상자는 무관합니다. 대입 특례에 관해서는 지망 대학교 또는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2. 복수 국적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질의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로 엄마와 함께 해외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후 한국으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등학교에 특례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어 외국인학생으로서의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부모 모두를 동반하지 않고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거주한 경우는 귀국하여 편입학 신청 시 일반 편입학 대상자에 속합니다.

※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요지

3. 한부모 가정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질의

법적으로 현재 아빠가 없고 엄마와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친척이 거주하는 외국으로 엄마와 함께 대략 3~5년 유학 후 귀국 시 중·고등학교에 특례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특례 편입학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 실체류 기간
학 생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모(母)의 거주·실체류 기간과 학생의 거주·재학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부모 가정을 입증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특례 편입학 대상자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요지

4. 전 가족 이민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질의

5살 때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회복하여 귀국하려 합니다.

현재 학생 나이는 우리나라 기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특례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자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자격 요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u>부모와 함께 2년 이상</u>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편입학을 신청한다면, 외국인 학생으로 특례편입학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으로 부모의 거주 · 실체류기간과 학생의 거주 · 재학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특례 편입학을 위한 세부 기준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 실체류 기간
학 생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요지

5. 부모 중 1인의 실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질의

부모 모두 자녀 학생 2명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 유학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가 사업 운영으로 우리나라에 자주 입국하여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귀국 시 자녀 모두 중·고등학교에 특례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특례편입학을 위한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 실체류 기간
학 생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부모 모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한 부의 실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지

6. 2개국 이상 해외 학교 재학 후 귀국 시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



질의

자녀가 미국에서 2년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 및 체류하였다가 아빠는 사업상 한국에 귀국하고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1년을 더 공부하다 귀국 예정입니다. 학생 나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데 귀국 시 특례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의 특례 편입학을 위한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 실체류 기간
학 생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부가 영국으로 가지 않고 먼저 귀국하더라도, 미국에서 학생이 2년 이상 거주·재학하고, 미국에서의 부모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실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특례 편입학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요지

7. 부(父)의 해외 주재원 근무 중 모(母) 귀국



질의

부(父)의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와 함께 출국하여 외국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8개월을 함께 지내다가 도중에 모(母)가 사정상 귀국하였는데 학생이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다면 특례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편입학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요지

8. 특례편입학 요건의 중복 사용



질의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 후 귀국하여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에 해당하여 현재 공립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입니다. 기존의 특례 편입학 요건으로 영훈국제중으로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특례편입학 대상자 요건으로 일반 공립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이 영훈국제중학교로 다시 특례편입학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중학교에서 국제중학교로의 전입학 절차·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제중학교로의 전학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 준해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합니다.



요지

9. '부'의 해외발령으로 전 가족이 출국할 예정이나 '부'의 체류 국가와 다른 국가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질의

아버지께서 쿠웨이트로 발령받아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어머니는 쿠웨이트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함께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려 합니다.

추후에 귀국자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父)의 발령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모(母)와 함께 거주하며 해당 국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해외 학력 인정 학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국 후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관에 귀국자 편입학 신청 후 배정학교에서 서류 심사와 함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년 결정이 가능합니다.

※ 학교급별 귀국자 편입학 신청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받은 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거주지 학군 희망학교

그러나 국제 정세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안전상의 이유로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에는,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의 제3국 수학 인정서를 발급받아 해외 학력 인정 학생으로 서류 심사를 통한 학년 결정이 가능합니다.



요지

10. 자녀 홀로 귀국한 경우



질의

부모는 해외에 있고 고등학생 자녀만 조부모님댁으로 귀국했습니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등학교 전·편입학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므로, 조부모만 함께 거주한다면 편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요지

11. 초중고생(D-4-3) 비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질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초중고생(D-4-3) 비자인 상태에서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단기 체류 비자(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등)인 경우 학교에 입학할 수 없나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편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편입학 시, 별도의 비자 요건은 없으며 결원이 있을 경우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편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로 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출신 국적, 체류 신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학년 배정은 해당 학교장이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및 학칙 등에 의해 결정

구비서류



요지

1.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한 재외동포인 경우 대체 서류



질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한 재외동포의 경우 귀국자 편입학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등본은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지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 대체 문의



질의

외국에서 수학한 학교에서 재학사실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없고, 생활기록부로는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과 성적이 나와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공증이 된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요지

3. 국내 최종학력 증빙 서류



질의

부(父) 주재원 발령으로 4년간 외국 정규학교 재학 후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합니다. 국내 초등학교에서 수학한 최종학력 증빙 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 최종학교 재학(정원외관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인근 초·중·고 행정실에 방문하여 발급)

※ 단, 인정유학자의 경우 면제처리가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가능



요지

4.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문의



질의

귀국자 편입학 서류 중에 예방접종확인서가 있는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아기수첩에 받은 내용만 있습니다. 접종확인서가 따로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 거주 시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학생/학부모)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② (보건소) 제출받은 증명서를 전산 등록하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③ (학생/학부모) 편입학 신청 기관에 제출



요지

5. 외국학교가 아닌 현지 교육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를 학교가 아닌 현지 외국 교육부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학력 증빙서류는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나, 국외 현지 교육부에서만 발급되어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된 서류로 학교명, 재학 기간, 성적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요지

6. 해외학교 학력 증빙 서류의 학교장 서명을 영사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해외학교 학력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서류에 학교장 서명이 꼭 필요한지요? 학교장 서명 대신 영사 확인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해외학교 학력 증빙 서류에는 필수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① 해외에서 재학한 전체 기간(모든 학교)에 대한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재학 기간 및 재학 학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③ 모든 이수 학기에 대한 성적이 산출되어야 함
- ④ 현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⑤ 한글 또는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물(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⑥ 외국의 학력 인정 정규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방법	내용
① 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교 명단에서 확인됨 ⇒ 보호자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 ※ 교육부(www.moe.go.kr)>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명단
② 아포스티유 확인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
③ 영사 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을 받음
④ 그 외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함 (예) 해외 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인쇄하여 제출

따라서 영사 확인으로 학교장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지

7. 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 문의



질의

특례 편입학 대상입니다. 제3국 수학인정서는 무엇인가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제3국 수학인정서는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지

8.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문의



질의

귀국자 편입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무엇이며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가요?



답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 구청, 정부24(www.gov.go.kr),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절 차



요지

1. 귀국자 편입학 시기



질의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정규 학교에 두 자녀가 재학중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려 하는데 귀국 후 몇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귀국자 편입학은 우리나라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외국 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편입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학년 결정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학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귀국자 편입학은 3학년 1학기(기준일 8.31.)까지 허용하며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전·편입학 제한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지

2. 외국인학교 귀국자 편입학



질의

해외에서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수료 중이며, 귀국하여 외국인학교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혹시 의무교육대상자는 일반 초등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답변

외국인학교 진학도 가능하며,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3. 천재지변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질의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한 후 필리핀에 가서 1년 과정을 수료하려고 했으나 내전으로 인해 1~2개월 이르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귀국자 편입학이 가능할까요?



답변

학생 보호를 위해 ①의무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로 의무교육이 면제되었던 학생,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유학 자격을 갖춘 학생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기 입국(6개월 미만)하게 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편입학 허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① 혹은 ②의 사유로 출국한 경우라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학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의무교육대상자로 출국 시 정원외관리된 경우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로의 편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요지

4. 국내 최종 재학 학교와 학교급을 달리하여 편입학 가능 여부



질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이 미국의 대학으로 교환교수로 발령을 받아,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가족이 다 같이 출국 예정입니다. 귀국하게 되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을 달리하여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부의 교환교수 발령으로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학교에서 수학 후 귀국자 편입학을 신청한다면 학년 결정에 따라 학교급을 달리하여 편입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지

5.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 재취학 문의



질의

국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끝나가는 1월에 엄마의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과 엄마가 함께 출국하여 외국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외국에서 6개월의 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 국내 복귀 시 6학년 2학기로 재취학 가능한가요?



답변

출국 이후 미인정 결석이 지속되어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합니다.

해외 학력인정 학생이 아닌 경우, 출국 시 재학중인 국내 학교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5학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6학년으로 진급 후 결석 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1/3이 지난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즉, 6학년 2학기로 재취학을 하더라도 진급이 불가하며 다음 해에 6학년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6.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말 귀국자 재취학



질의

12학년제인 외국에서 초등학교 1~6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12월 중순에 귀국하면 중학교 신입학 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 대상자가 귀국 후 배정 대상자 추가 처리 기간인 12. 31.까지 초등학교에 재취학을 하여 졸업 예정자가 되는 경우, 중학교 본배정 추가대상에 해당되어 졸업 예정인 초등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상자가 귀국 후 배정 대상자 추가 처리 기간인 12. 31.까지 초등학교에 재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배정 대상이 아니므로 중학교 본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2. 31. 이후 초등학교 재취학자 및 인정유학자는 재배정 접수 기간에 재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초등학교에 재취학하지 않은 미인정유학자의 경우 중학교 본배정 및 재배정이 불가하며, 신학년도 새학기 시작 이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재취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지

7. 귀국 후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의 재취학



질의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인정유학 후 귀국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5~6학년을 이수했습니다. 중학교 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의 이수학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초졸 검정고시 합격 후 중학교로 재취학해야 합니다.



요지

8. 중학교 3학년 전·편입학 제한기간에 귀국한 경우



질의

중학교 3학년 전편입학 제한기간에 귀국한 학생입니다. 중학교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재취학 후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국자는 중학교 3학년 전·편입학 제한 기간에도 재취학이 가능하나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경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총점(100점) = 중2, 3학년 교과점수(80점) + 중학교 전 학년 출결점수(20점)

다만, 중학교 성적이 없더라도 고입 추가전형 특례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5월 추가전형으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고등학교 등교를 희망하신다면, 한국학제 기준 9학년 과정을 다 마치신 상태에서 귀국해야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학년 결정



요지

1. 외국 학력 인정받기 위한 최소 이수 기간



질의

국내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외국에서 4개월 정규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내 복귀 시 몇 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역년 (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편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개 월에 미달하지만 한 학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요지

2.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 여부



질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외국으로 가서 7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중2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일반 중학교로 재취학 시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받아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학력이 인정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및 제주 국제학교는 예외적으로 학력 인정됩니다.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훌 아시아(BHA), SJA Jeju는 인정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 인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또한,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3. 초등학교 미인정학력 합산하여 중학교 귀국자 편입학 가능 여부



질의

한국에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가서 4학년부터 7학년 까지 재학 중입니다. 귀국 후 중학교로 귀국자 편입학이 가능할까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국내 학교를 재학하였더라도 학력 인정하지 않는 학교라면 수학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학교의 수학기간을 인정받더라도 이수 학기가 부족하여 중학교 귀국자 편입학이 어렵습니다. 초졸 또는 중졸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지

4. 국내 체류하며 해외 학교의 원격(온라인) 수업 듣는 경우



질의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때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도중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국내에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던 해외 학교의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학교 수업을 들어도 향후 편입학 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

교육부에서는 원격학습이 포함된 외국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학력 인정하나, 국내 거주 시 원격 수업 기간은 1개월 이내만 인정합니다.

만약 국내 체류하면서 외국 정규학교의 원격수업을 듣는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 시 아래 학년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 하여, 수학 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 결정 문제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일시 귀국한 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학력 인정 학생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체류 원격수업 학력 인정 기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1. 대상: 해외 학력 인정 학생(①의무교육대상자 중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학생*, ② 인정 유학생**)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한 경우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학하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유학 자격을 갖춘 학생

2. 요건: ① 유학 대상국 입국 금지 또는 해당 학교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공문, 안내문, 학교장 확인서 등 ② 원격수업 기간에 대한 재학 증빙 서류

< 근거: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393('20.4.22.)호, 서울시교육청 총무과-10928('20.4.23.)호 >



요지

5.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시 학력 인정 여부



질의

초등학교 졸업 직후 6개월 정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려 합니다.

어학연수 이후 귀국하면 중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력 인정은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하며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됩니다.



요지

6. 외국에서 유치원 과정 이수 후, 국내 복귀 시 편입학 학년 문의



질의

국내 학교는 다닌적 없고 외국에서 유치원 과정만 1년 다녔을 경우, 국내 복귀 시 몇 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복귀 시 1학년부터 취학하여야 합니다.



요지

7. 외국에서 흠풀을 이수한 경우, 학력 인정 여부



질의

외국에서 흠풀을 이수하였습니다. 국내 복귀 시 학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흠풀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흠풀링 과정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흠풀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요지

8. 해외에서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국내에서 고1까지 마치고, 일본(3학기제)에서 9학년 1~3학기, 10학년 1~2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국내로 돌아왔을 때 몇 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일본에서 이수한 9-1학기~10-2학기 과정은 국내학교의 재학 학년보다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로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으며, 국내 귀국하여 편입학 신청 시 11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9. 한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국내 학력은 없으며 한 학년이 3학기제인 국가에서 초등학교 1학년 3학기 과정부터 4학년 3학기 까지 마쳤습니다. 국내 복귀 시 몇 학년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3학기) 중 1개 학기(3학기)만 이수한 경우로 3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2학년~4학년만 인정되며, 귀국 시 4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0.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질의

정당한 출국 사유가 있는 해외 학력 인정 학생입니다. 국내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싱가풀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싱가풀에서는 8학년 1학기부터 9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로 귀국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년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한 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국내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뒤 싱가풀 학교(3월 학기제, 한 학년을 4학기로 운영)에서 8학년 1학기부터 9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였지만 국내 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로, 귀국 시 9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4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1. 13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13학년 3학기제인 영국 국제학교의 1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국내 복귀 시 몇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

13학년제에서의 12학년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며, 3학기 과정 중 1학기만 이수한 경우는 한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합니다. (※ 초·중학교는 해외 학력인정 학생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며,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2. 2개국 이상 이동하여 학제 차이로 이수 학기가 중복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이수한 뒤에,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A국으로 유학을 떠나 8학년 1학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B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시기상 8학년 1학기 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국에서 9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오려는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정하며,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옮겨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결정합니다.

학제 차이로 인해 8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하였다면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옮겨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A국)								1				
외국 교육 연한(B국)									2			
학년 결정									3			



요지

13. 9월 학기제인 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경우



질의

2012년생으로 2019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나, 부의 주재원 발령으로 2019년 2월 미국에 가는 관계로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9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2019년 9월에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2020년 2월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 2020년 3월에 나이에 맞는 친구들과 같이 2학년으로 재취학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 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합니다.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며,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2019년 9월 외국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신입학 → 2020년 2월 외국학교 1학기 이수 → 이수한 당해(2020년 3월) 국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로 취학 가능합니다.(단, 1학기 이수 후 연속하여 국내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참고】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요지

14. 학년을 낮추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질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수 후 영국공립학교(13학년제) 10-11학년을 이수하고 8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수 학기로 판단할 때 고1-2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년을 낮추어서 중3-2학기로 편입학하거나 한 학기동안 학교를 쉬고 다음 해에 고1-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

귀국한 학생의 고등학교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의거 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영국 정규 학교(13학년제) 10학년, 11학년을 이수하고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 편입학 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이 허용한다면 학년을 낮추어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하거나 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13학년제)													
학년 결정													



요지

15.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4학기제로 운영하는 외국 정규 학교에서 7학년 4학기부터 11학년 3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편입학 신청하게 되면 몇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또한,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4학기 중 1학기만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국내 최종 학력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4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6. 학제가 다른 2개국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9월에 출국하여 뉴질랜드 학교(13학년제)에서 7학년 4학기부터 9학년 4학기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8학년 4학기부터 9학년 4학기까지 이수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4학기 중 1학기만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수한 7학년 4학기와 미국에서 이수한 8학년 4학기를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 (뉴질랜드, 13학년 4학기제)												
외국 교육 연한 (미국, 12학년 4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7. 국내 최종 재학 학년보다 상위 학년을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출국하였으나 해외(12학년제)에서 6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어 6학년 1학기부터 10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였습니다. 다녔던 외국 학교는 한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 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한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외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18. 국내 학기 중 출국하여 외국 학기 이수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6월에 출국하여, 9월부터 학제가 시작되는 외국(12학년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마쳤습니다. 국내 복귀 시 몇 학년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귀국 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국내 학기 도중 출국한 경우 해당 학기 이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학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년 1학기 중복이 인정되어 귀국 시 5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으며,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												
학년 결정												

-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국내 · 외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귀국 시 5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												
학년 결정												



요지

19. 중2-1학기를 5월말까지 다니고 미인정 유학으로 8-1학기부터 9-1학기까지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 인정 여부



질의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 5월말까지 다니고, 미인정 유학으로 독일에서 8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가서 9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12월에 귀국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중학교 졸업 인정이 되는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국내 학기 도중 출국한 경우 해당 학기 이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최종 재학 학년인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이수 여부에 따라 학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독일에서 수학한 중학교 8-1학기~9-1학기 과정을 합산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												
학년 결정												

-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한 전·편입학 제한 기간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												
학년 결정												

참고로 전·편입학 제한 기간 이후 귀국하게 되는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학력 취득 후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지

20. 외국 학교 학기 도중 귀국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수료 인정 여부 및 관련 규정



질의

중국 주재원 파견으로 현지 국제학교(3학기제)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학하려는 학교는 3학기제이고 1학기는 8. 22. ~ 12. 13., 2학기는 1. 6. ~ 3. 27입니다. 5. 20. 출국 예정이고 8. 22. 입학 예정이며 1-2학기를 다닐 예정이나 2학기를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3. 6. 귀국하여 한국 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학기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며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한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 이수인정 방법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해당 국가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국내 기준)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학생이 국제학교 2학기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편입학 예정인 국내 학교에서 관련 서류들(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국가 기준 2학기 이수 여부를 판단한 뒤 학생의 최종 학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지

21. 국내 학기 중 출국, 해외 학기 중 귀국한 것을 합쳐 1학기 인정 여부



질의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3학기제인 외국학교에서 8학년 마지막 학기인 세번째 학기를 이수하고 9~10학년(6학기)을 이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한 것과 외국에서 8학년 마지막 학기인 세번째 학기를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1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나요?



답변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이 때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한 학년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 이수인정 방법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해당 국가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국내 기준)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국내 학기 도중 출국한 경우는 해당 학기 이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최종 재학 학년인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이수 여부에 따라 학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외국학교 9~10학년 과정을 합산하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학년 결정이 가능합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학년 결정이 가능합니다.

✓ 표로 보는 학년 결정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 최종 학력													
외국 교육 연한(3학기제)													
학년 결정													



요지

22. 학제가 다른 2개국에서 유학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인정 여부



질의

일본 초등학교(6년제)에서 1~2학년을 수학하고 베트남 초등학교(5년제)에서 3~5학년을 수학하여 초등학교를 최종 수료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96조제1항의제5호에 따르면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교육부 안내(2015. 2. 2.)'에 따르면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 2. 2.)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요지

23. 학제가 다른 1개국에서 유학한 경우 학년 결정



질의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2016년 3월)하여 4학년 1학기(2019년 8월 말)까지 마치고 베트남 초등학교(5년제)에 5학년 1학기 과정으로 전입하여 6학년 2학기까지 수학(총 11학기)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1개 국가에서 유학한 경우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합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국내 최종학력에 해외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6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6학년 2학기로 재취학(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단, 인정유학 또는 외국인의 경우,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기 타



요 지

1.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 확인 방법



질 의

교육부의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변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 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지

2. 재학 중인 외국 학교명이 변경되었는데 교육부의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질의

재학 중인 외국 학교의 교명이 변경되었는데, 교육부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교육부에 문의하여 학교명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 목록은 외교부의 협조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조사하여 교육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목록 수정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해외공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거주 중이신 지역의 대한민국 공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3. 고등학교 귀국자 편입학 이중 지원 가능 여부



질의

고등학교로의 귀국자 편입학 신청 시, 이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울 소재 후기 일반고로의 귀국자 편입학은 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으며,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귀국자 편입학 신청 시 이중 지원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중지원에 따른 제출서류 준비 및 업무 혼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편입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지

4. 2학기 중간 귀국자의 진급 가능 여부



질의

1년에 수업일수 2/3이상 이수해야 상위학년 진급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기 중간에 귀국하게 되면 수업일수 충족이 되지 않아 진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라 귀국자 편입학의 경우 입급일로부터 2/3 이상 출석한다면 진급이 가능합니다.